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1 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한지아・임이자・이상휘

김 건 • 박수민 • 박성민

김종양 · 김기현 · 김예지

백종헌 · 서일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, 마약,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함.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」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」(의

안번호 제10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<u><</u> 삭	제>			
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					
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					
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					
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					
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					
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				
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				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					
지원센터(이하 "중독관리통합					
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					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				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					
발견 체계 구축					
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					
<u>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</u>					
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					
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					
<u>업</u>					
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					
위하여 필요한 사업					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				
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					

 통합지원센터 설치・운영에 필

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 부담할 수 있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 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 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.